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6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최종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받고 있는바, 기금 운용사무의 일부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,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함.
- 또한,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6조제5항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 전반에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).
- 나.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고,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(안 제6조제5항).

다. 안 제6조제5항을 수정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수정 사항을 반영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4항 중 “위원회의 위원장 및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”로 하고, 같은조 제5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추가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칙 제2조 중 “제6조제3항 및 제4항의”를 “제6조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의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: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: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"위촉직 위원"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위촉직 위원: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</p> <p>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p>

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

⑥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

⑥ 위촉직 -----

-----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(생략)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및 **제4항**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

⑥ (개정안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및 **제4항, 제5항**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실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교육행정국장”을 “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위촉”을 “위촉직”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 - 나.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 - 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 제3항 및 제4항,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기획조정실장이 된다.</u></p> <p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교육행정국장, 예산담당관, 교육시설안전과장</u>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<u>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</u>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 <신설></p>	<p>제6조(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3명</u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(이하 “위촉직 위원”이라 한다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부교육감, 기획조정실장, 교육행정국장</u>-----</p> <p>2. 위촉직 위원 :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u> 나. <u>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</u></p>

<신설>

<신설>

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
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
다.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
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
문가

라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⑥ 위촉직 -----
-----.